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2021. 02. 04.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제정조례안은 2020.10.07. 이인락 의원 외 8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10.08.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드림(의안번호 제2518호).

2. 제안이유

「도로교통법」이 일부개정 되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도로상 운행 규정이 마련된 바, 양천구민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 및 친환경 이동장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조).

나.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안 제5조).

다.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6조).

라.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음(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도로교통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없음.

라. 기타

1) 개정안 : 별 첨

2) 입법예고 : 2020. 10. 09. ~ 2020. 10. 13.

5. 검토의견(전문위원 신훈)

○ 본 제정조례안은「도로교통법」이 개정됨(2020.12.10. 시행)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가 규정되었기 때문에, 양천구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 우리나라 개인형 이동장치 시장은 2016년 6만대에서 2017년 7만 5천대로 20% 증가하였고, 이와 같은 성장률을 토대로 2022년에는 20만대까지 확대[1]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안전사고도 이와 비례하여 2015년 14건에서 2018년 233건에 이르는 등[2]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자전거도로를 통한 통행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이 2020년 6월 9일 가결되었고, 6개월 후인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 됨.

【표 1】「도로교통법」<법률 제17371호, 2020. 6. 9.> (2020.12.10.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가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1) 한국교통연구원, Brief KOTI, 2017 Vol.1 / No.3

2) 편리한 전동킥보드, 안전하게 이용하세요,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9.3.21.)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의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13조의2(자전거등의 통행방법의 특례)** ① **자전거등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제15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만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전용차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표 2】「도로교통법」 주요 개정 내용

① 개인형 이동장치 정의 :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25km, 총 중량 30kg 미만
② 운전면허 없이 이용가능 ③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④ 만13세 미만 이용 금지 ⑤ 자전거용 인명보호 장구 착용 의무

- 이를 종합할 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으로 하여금 안전계획 마련 및 안전사고 예방의 책무를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음.
- 안 제3조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안전사고 발생을 줄이기 위한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3조제2항의 '안전의무'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상위법령에 위임 없이 적극적인 의무부과로 이어지지 않게 유의해야 할 것임.
- 안 제4조는 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조문임.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사고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5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저변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6조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안 제7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 및 사업 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별 문제가 없음.
- 안 제8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하여 현재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면허 보유여부, 주행 가능도로, 안전장구 착용 등은 「도로교통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경찰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므로, 의미 있는 조문이라 사료됨.

○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따른 근거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됨.

관계법령 발췌서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 략)

19의 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의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0.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자전거 및 전기자전거를 말한다.

21. “자동차등”이란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

21의 2.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

22. ~ 33. (생 략)

부칙 <제17371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4조제6호의2 및 제6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한된 최고속도를 시속 100킬로미터 초과한 속도위반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3항 위반행위에 관한 제93조제1항제5호의3 및 제151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위반행위로부터 적용한다.